

## 폐의류 재활용은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

2023년 8월 16일자 동아일보 <中 이차전지 침단도어록... 韓은 건전지 규제에  
막혀>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

### □ 보도 내용

- 해외서 급성장 현옷 리셀 스타트업, 한국선 ‘폐기물 규제’ 발목  
- 쓰레기나 고철 처리업체처럼 사업 규모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환경오염  
방지시설 등을 갖추어야 사업이 가능해 사업 제한 위기

### □ 설명 내용

- 폐의류를 수집·운반 또는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환경  
오염방지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.
  - 가정 등 생활폐기물로 발생하는 폐의류를 수집·운반 또는 재활용할 경우  
일정 구비 요건을 갖추어 폐기물처리 신고만 하면 사업이 가능합니다.
    - ▶ (수집·운반) △사무실 또는 연락장소, △수집·운반 차량 1대 이상
    - ▶ (재활용) △보관시설(1일~30일분 이하) 1식, △재활용시설 1식, △수집·운반 차량  
1대 이상(스스로 운반할 경우)
  - 폐의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고철, 폐지와 같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 
면적이나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출 필요가 없으며, 또한, 단순 수선별을  
통하여 재활용할 경우 재활용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합니다.
- 참고로, 폐의류의 재활용유형(R-1) 추가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 유형을  
확대\*하는 등 규제를 개선(‘23.5)하였으며,
  - \* (당초) 수리·수선하여 재사용·수출 → (완화) 단순 수선별하여 재사용·수출
- 앞으로도 폐기물 규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 
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.

담당 부서	자원순환국	책임자	과 장	정호경 (044-201-7421)
	생활폐기물과	담당자	사무관	배영균 (044-201-7425)